
- 2024년 야외체육시설 천연잔디구장 -

유지관리보수 과업 지시서

2024. 02. .

서구시설관리공단
[시설운영팀]

과업지시서

1. 과업개요

가. 과업명 : 2024년 야외체육시설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보수 단가계약

나. 과업 목적

서구 덕흥동, 마륙동 일원의 천연잔디구장에 생활체육인들의 이용증가 및 다양한 기상 변화(여름철 폭염 및 호우) 등으로 구장에 긴급 복구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, 신속한 정비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여 각종 체육행사, 시설대관,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, 잔디 훼손 및 병충해 등 사전 예방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.

다. 과업 기간 : 착수일로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한다,

라. 과업 범위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(㎡)
1	덕흥동 축구장	서구 덕흥동 146 일원	2면(12,800㎡)
2	덕흥동 야구장	서구 덕흥동 146 일원	2면(13,782㎡)
3	마륙동 축구장	서구 마륙동 606	2면(8,100㎡)

마. 과업 위치

	
서구 덕흥동 146번지 (축구장 2면, 야구장 2면)	서구 마륙동 606번지 (축구장 2면)

바. 과업 내용

구 분	과 업 명	내 용
1	예찰 및 관수	구장 상시 점검 및 가뭄이 심할 경우 물주기 등
2	잔디 깎기	핸드가이드 식 구장 내 잔디 깎기
3	잔디 붙임, 다짐	수시(훼손부위), 평때다짐작업
4	제초	일반잔디지역 풀 뽑기(제초), 풀 깎기(예초), 후처리 등 필요한 조치
5	마사토업	야구장(내야 그라운드 정비작업)
6	잔디배토, 시비	모래부설(배토작업), 비료(시비작업)
7	구장관리	구장 내,외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, 이동식 스프링클러 물주기

사. 단가계약 업체 자격조건

- 1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 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
- 2)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
- 3)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,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

아. 과업비 지급

- 1) 과업비 청구는 주어진 과업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과업비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
- 2) 과업비를 청구할 경우 지출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청구서(공문) 및 세금계산서
 - 작업일지(작업내용, 투입인원, 장비, 자재, 특이사항 등 내용 포함)
 - 사진대지

2. 일반 시방서

가. 적용범위

- 1) 본 일반시방서는 "2024 야외체육시설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보수 단가계약"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. 본 계약에서 계약업체는 계약에 관계되는 제반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승인 조정용역 시방서에 따른다.

나. 용 어

- 1) 본 시방서에서 “공단”이라함은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을 말하며, “계약업체”라함은 야외체육시설 천연잔디구장 단가계약 계약자를 말한다.
- 2) “감독관”이라함은 공단의 관리 담당자를 말하며 계약업체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따라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지시, 승인, 협의,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다. 계약업체의 의무

- 1) 계약업체는 작업 현장에서 업체를 대리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작업시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업무를 지휘 감독해야 한다.
- 2)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3) 현장대리인은 작업전 감독관에 보고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, 작업 완료시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작업을 마무리하여야 한다.
- 4) 현장대리인은 과업 기간 중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, 부득이 작업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5) 계약업체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- 6) 계약업체는 과업 수행 전·중·후 현장관리 등 모든 사항은 공단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- 7)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 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라.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

계약업체는 작업 개시일 3일 전까지 아래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.

- 1) 단가 산출내역서
- 2) 과업 계획서(시행순서 및 작업 방법,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등)
- 3) 작업일지
- 4) 긴급사태 발생 시 비상 연락망 수립 등 기타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

마. 과업의 수행 등

- 1)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일반·특별시방서에 의거 공단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,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
- 2) 병충해 방제 작업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고, 사용한 폐기물(빈병 등)은 관련법에 적법하게 천연잔디구장 밖으로 반출처리 한다.

바. 배상책임 및 민원의처리

- 1) 계약업체는 단가계약 수행 중에 천연잔디 구장의 시설물 등에 발생하는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,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특히, 작업 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책임은 물론 모든 법률상(민·형사)의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계약업체가 책임을 진다.
- 2) 본 과업 수행 중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업체가 책임을 지며, 대내외 기관의 검사 시 지적된 문제의 조치사항 또는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사. 문서 등의 귀속

계약업체는 계약서에 의한 단가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제출한 관련 서류 등 일체의 문건은 공단에 귀속한다.

3. 특별시방서

가. 적용범위

본 특별시방서는 “2024 야외체육시설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보수 단가계약”에 적용한다.

나. 적용기준

본 특별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, 관계 지침 및 국토교통부 승인 조정용역 시방서 등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, 일반시방서, 특별시방서와 서로 상이한 사항은 공단과 계약업체가 협의 결정한다.

다. 과업 수행 요령

- 1) 계약업체는 천연잔디구장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
- 2) 잔디의 고품질 유지를 위한 깎기, 시비·시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잔디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3) 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은 공단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사용토록 하고 작업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확보해야 한다.
- 4)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손상된 잔디에 대해서는 보식, 부분 배토 작업을 실시하여 잔디구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5) 병해충방제용 약제(농약류) 사용시 보호용 안전 장구의 착용 등 사전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라. 잔디깎기 작업

- 1) 잔디 깎기의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처리한다.
- 2) 예초시 운동장 잔디 문양내기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.
- 3) 잔디깎기 높이는 전체잎의 30~40%이상을 제거하지 않는다.
- 4) 잔디깎기 높이는 20~30mm 사이로 실시한다.
- 5) 잔디의 잎 길이는 전체 잎 길이의 1/3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- 6) 잔디 예지물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질병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거나 잔디관리에 방해가 될 때 제거해 주어야 한다.
- 7) 경기 일정을 파악하여 경기당일 모든 조건이 경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
마. 잔디 배토 작업

- 1) 배토사로 사용코자 반입되는 모래는 축구경기장 조성 모래와 같은 조건의 모래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.
- 2) 혼합 상토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천연잔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3 ~ 5mm 두께로 실시해야 한다.
- 3) 배토 후 스틸매트를 사용하여 운동장 면 정리를 해야 한다.
- 4) 배토사는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배토 과정 중 운동장에 투입된 이물질(자갈, 낙엽 등)은 제거해야 한다.
- 5) 배토 시 경기장 높낮이(구배)를 조절하여 그라운드의 평탄도를 유지하도록 한다.
- 6) 축구장의 부분배토, 손배토는 경기 후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, 배토후 스틸매트 끝기를 이용하여 노면을 고르게 하여야 하며,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배토 부분을 정하여 실시한다.

바. 잔디 붙임 및 다짐

1) 잔디 붙임

- 잔디 붙임은 붙임 양과 운동장 상황을 정리하여 작업상황을 감독관에게 필히 보고하고 진행한다.
- 계약업체의 작업 소홀로 병충해가 번져 잔디가 고사하였을 경우 즉시 붙임 작업을 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업체가 전액 지불 한다.
- 경기장 내 크게 훼손된 부분을 선택하여 컷터기로 굴취 후 지반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면을 조성하여 잔디를 이식한다.
- 작업한 이후에는 즉시 관수 처리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2) 다짐

- 다짐은 로울러, 다짐기 등을 사용하고 잔디구장의 상태와 계절별 생육 조건에 맞게 실시한다.
- 골대하부, 선심지역의 잦은 답압지역은 고사될 확률이 높으므로 보식 후에는 레벨상의 문제가 없게 롤러 후 수평계로 측정하여 완벽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.

사. 제초작업 및 시비

1) 풀 뽑기

- 인력 제초를 원칙으로 하고 잔디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초 포크 등을 사용해서 잡초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는다.
- 뽑아낸 잡초는 지정장소에 모아서 한꺼번에 교외 반출처리하고 제초 흔적을 깨끗이 청소한다.
-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클로버, 쑥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초제로 살포 가능하며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제초제의 농도, 살포량, 살포 속도 등은 잔디 생육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한다.

2) 풀, 잔디 깎기

- 녹지대의 풀(잔디) 깎기는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며, 수목이나 시설물 등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.
- 잔디 깎는 높이는 제거부분이 40%이상 제거되지 않도록 적정시기를 선택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5cm가 넘으면 2~3cm 정도로 깎아 적정한 초장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깎여진 풀, 잔디는 지정장소에 모아서 한꺼번에 교외 반출처리하고 작업 후에는 깨끗이 청소한다.
- 깎기 작업 전에는 기계를 점검하여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, 안전 보호장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3) 농약 등

- 비료, 제초제, 영양제, 살충제 및 살균제 등은 잔디용으로 고시된 것이어야 한다.
- 약제사용은 사용전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, 기타 돌발 병해충 등으로 필요한 약제의 사용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병충해 외에 관리 소홀로 발생한 병충해 방제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.

4) 시비

- 시비는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시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.

- 가능하면 예초 후 비 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한 경우 시비 후에는 반드시 관수를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.
- 시비 작업은 고른 살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잔디의 균일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아. 관수작업 및 이동식 스프링클러 물주기

- 1) 계약업체는 수시로 천연잔디구장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우천일수 등을 고려하여 가뭄, 건조성 기후로 인한 고사 및 수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관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2) 물주기 작업은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규칙적으로 실시하며, 작업시간은 해 뜨기 전·후나 일몰 직전에 실시하며 기온이 높은 한낮은 피하도록 한다.
- 3) 물주기 작업량은 잔디생육에 따라 조절하여 실시한다.
- 4) 휴면기(10월 ~ 12월)에는 이동식 스프링클러 드레인 및 해체 작업, 스프링클러 동파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.

자. 재료관리

- 1) 계약업체는 잔디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사용 전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합격품을 사용한다.
- 2) 과업수행에 따른 일체의 부산물을 철저히 수거, 적합한 절차에 의해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한다.(적합한 절차라함은 재활용, 특정폐기물에 따른 분리수거 및 처리를 말한다.)

차. 기타사항

- 1) 천연잔디구장 관리에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.
- 2) 계약업체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예고된 경우 또는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 예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업체가 자연재해 예방을 하였음에도 훼손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.
- 4 잔디관리에 필요한 최소장비(잔디깎기 기계(승용), 핸드메이드, 다짐기 등)는 계약업체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
- 5) 신속하고 체계적인 천연잔디 구장 관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의한다.
- 6) 본 단가계약 과업 시행 중 계약업체가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수 있다